

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21]

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(제68조 관련)

선박의 종류	작업 내용		표시등화	가시거리	설치기준
1. 트롤 어선	가. 외끌이의 경우	1) 어망을 투입하고 있는 경우	수직선상에 백색 등화 2개	법 제8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다른 등화보다 그 가시거리가 짧아야 하되, 1해리 이상의 수평선 주위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.	0.9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.
		2) 어망을 건져 올리고 있는 경우	수직선상에 홍색 등화 1개와 그 윗부분에 백색 등화 1개		
		3) 어망이 장애물이 걸린 경우	수직선상에 홍색의 등화 2개		
	나. 쌍끌이의 경우		외끌이의 경우에 해당하는 등화 외에 야간에는 한 쌍을 이룬 다른 선박의 진행방향을 비추는 탐조등 1개		
2. 선망 어선	어구에 의하여 조종능력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		수직선상에 1초마다 번갈아 섬광을 발하며, 꺼지고 켜지는 시간이 동일한 황색의 등화 2개		